

한강 푸르지오 리버프론트 무순위(사후) 입주자모집공고



※ 본 아파트 입주자모집공고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한 후 청약 및 계약에 응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행위 등에 대하여는 청약자 및 계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 주요정보

(분양문의) 031-982-3337 / 1668-0552

주택유형	규제지역여부	무순위(사후) 자격요건	
민영	비규제지역	무순위(사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전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재당첨제한	전매제한	거주의무기간	분양가상한제
없음	3년 (다만, 기간 내 소유권 이전 등기 시 해제)	없음	적용

구분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무순위(사후) 입주자모집공고일	무순위(사후) 접수일	당첨자발표일	서류접수 및 계약체결
일정	2026.07.30.(목)	2026.09.09.(수)	2026.09.14.(월)	2026.09.17.(목)	2026.09.18.(금)

1

공통 유의사항

-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콜센터는 청약홈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이용안내 및 기본적인 청약자격 상담을 하고 있으며 고객 상담 과정에서 청약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한 정확하지 않은 정보의 제공으로 일부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청약홈 콜센터 상담내용은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자세한 문의사항은 사업주체를 통해 확인하시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2026.06.15.**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적용됩니다.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 본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5항 및 제23조제2항제7호에 따라 「출입국관리법」 제88조의 출입국사실증명서를 사업주체에 제출해야 합니다. 장기해외체류자는 무순위(사후) 청약신청이 불가하며, 이를 위반하여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출입국사실증명서 해외체류기간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한 기간(입국 후 7일 내 동일국가 재출국 시 계속하여 해외에 체류한 것으로 봄) 국내 거주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해당 주택건설지역으로 청약할 수 없습니다. 단, 90일 이내의 여행, 출장, 파견 등 단기 해외체류는 국내거주로 간주되어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청약 가능합니다.

- 사례1)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청약 가능합니다.
 - 사례2)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한 경우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불인정되며 기타지역 거주자로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8항에 따라 세대원 중 주택공급신청자만 생업에 직접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청약홈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청약으로만 신청이 가능(현장접수 불가)하며, 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방식만 가능합니다. 반드시 청약 이전에 청약통장 가입은행 및 취급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청약신청 유형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네이버인증서	KB국민인증서	토스인증서	신한인증서	카카오인증서
APT잔여세대 (무순위)	○						X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0조제1항에 따라 본 무순위(사후) 입주자모집공고의 입주자 선정 및 동·호수 배정은 한국부동산원에서 실시합니다.
-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 접수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유의사항 및 제한사항 등 본인의 자격사항에 대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청약하시어 부적격 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음이 확인될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 조치하며 관계법령에 의거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위장전입 및 불법 전매제한 등을 통한 부정한 당첨자는 「주택법」 제65조 및 「주민등록법」 제37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또한 2021.02.19.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6조에 따라 「주택법」 제64조 제1항 및 제65조제1항을 위반하여 적발된 경우, 위반한 행위를 적발한 날부터 10년간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2

단지 유의사항

- 본 주택의 무순위(사후)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6.09.09.(수)**이며(청약자격 요건 중 나이, 거주요건 등의 판단기준일), 주택관리번호는 **2026910227**입니다.
- 본 주택은 무순위(사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전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을 대상으로 공급합니다(외국인 청약불가).
- 본 주택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6.07.30.(목)**이며 최초 주택관리번호는 **2026000367**이므로, 본 무순위(사후) 입주자모집공고에 기재되지 않은 주택공급가격 및 단지여건, 유의사항 등의 세부 내용은 반드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문을 통해 확인하신 후 청약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본 주택의 금회 공급 주택형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시 1순위 및 2순위 청약 마감된 주택형으로, 예비입주자를 대상으로 추가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미계약 세대를 공급하는 것으로서 본 무순위 입주자모집공고의 입주로 선정되어 계약을 체결하고 분양권을 소유한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에 의거 향후 청약 시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간주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 및 계약 등 주요일정을 안내해 드립니다.

구 분	무순위(사후) 접수	당첨자발표	서류접수 및 계약체결
일 정	2026.09.14.(월)	2026.09.17.(목)	2026.09.18.(금)
방 법	■ (PC·모바일) 청약홈(09:00 ~ 17:30) ■ 현장접수 불가	■ (PC·모바일) 청약홈	■ 사업주체 건본주택 (주소 : 경기도 김포시 풍무동 368-7) ☎ 031-982-3337 / 1668-0552

※ 청약신청 취소는 청약신청일 당일 17:30까지 가능하며, 청약신청일 당일 17:30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청약신청 취소 불가

※ 모바일 :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 모바일 청약 시, 청약일 상당 기간 전에 앱을 설치하고 청약 시 사용할 인증서를 청약홈 앱으로 미리 저장하시기 바라며, 청약 당일 인증서 설치 문제로 청약이 곤란할 경우에는 PC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의 청약 신청은 1인 1건만 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청약 시 모두 무효 처리합니다.

- 2018.12.1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호의3, 제2조제4호에 의거 ‘세대’의 정의가 변경되었습니다.

- “세대”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이하 “세대원”)으로 구성된 집단(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

가. 주택공급신청자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부·모, 장인·장모, 시부·시모, 조부·조모, 외조부·외조모 등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이하 같음)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아들·딸, 사위·며느리, 손자·손녀, 외손자·외손녀 등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전혼자녀 등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을 말하며,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함

- 부동산 거래신고,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신고 의무화로 비규제지역인 경기도 김포시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및 별표1 규정에 의거 실제거래가격이 6억원 이상인 주택매매계약(최초 공급계약 및 분양권·입주권 전매를 포함)의 부동산거래 신고 시 자금조달계획과 입주계획서 및 매수자 본인이 입주할지 여부, 입주 예정시기 등 거래대상 주택의 이용계획의 신고를 의무화하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규정에 의거 부동산 계약 시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관할 소재지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공동으로 ‘부동산거래신고’해야 합니다. 따라서 부동산 거래신고에 따른 필요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공해야 하며,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 미비·미제출로 인하여 발생하는 과태료 부과 등의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의 전매제한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의 당첨자발표일(2026.08.20.)로부터 **3년간** 적용됩니다.

■ 공급위치 : 경기도 김포시 고촌읍 향산리 588-45번지 일원

■ 공급규모 : 아파트 지하 4층, 지상 38층 12개동 총 2,432세대 중 잔여 832세대

■ 입주시기 : 2031년 01월 예정(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함)

■ 공급대상

(단위 : m²,세대)

주택관리번호	모델	주택형 (전용면적기준)	약식표기	잔여세대수
2026910227	01	084.7402A	84A	705
	02	084.7060E	84E	70
	03	106.9778B	106B	55
	04	180.9387B	180B	2
	합 계			832

■ 공급금액 표

(단위 : 세대, 원)

약식 표기	동/라인	층	무순위 (사후) 공급 세대수	분양가격				계약금(10%)		중도금(60%)						잔금
				대지비	건축비	부가 가치세	계	1차	2차	1차(10%)	2차(10%)	3차(10%)	4차(10%)	5차(10%)	6차(10%)	30%
								계약 시	1개월 내	2027.06.17.	2028.02.17.	2028.11.17.	2029.07.18.	2029.12.17.	2030.05.17.	
84A	112동 5,6호	2층	2	278,465,600	365,534,400	-	644,000,000	10,000,000	54,400,000	64,400,000	64,400,000	64,400,000	64,400,000	64,400,000	64,400,000	193,200,000
		3층	2	281,492,400	369,507,600	-	651,000,000	10,000,000	55,100,000	65,100,000	65,100,000	65,100,000	65,100,000	65,100,000	65,100,000	195,300,000
		4층	2	284,519,200	373,480,800	-	658,000,000	10,000,000	55,800,000	65,800,000	65,800,000	65,800,000	65,800,000	65,800,000	65,800,000	197,400,000
	101동 5,6호 102동 5호 103동 5호 104동 5호 105동 5,6호 106동 5,6호 112동 5,6호(5층 이상)	2층	9	287,546,000	377,454,000	-	665,000,000	10,000,000	56,500,000	66,500,000	66,500,000	66,500,000	66,500,000	66,500,000	66,500,000	199,500,000
		3층	8	290,572,800	381,427,200	-	672,000,000	10,000,000	57,200,000	67,200,000	67,200,000	67,200,000	67,200,000	67,200,000	67,200,000	201,600,000
		4층	8	293,599,600	385,400,400	-	679,000,000	10,000,000	57,900,000	67,900,000	67,900,000	67,900,000	67,900,000	67,900,000	67,900,000	203,700,000
		5층-9층	53	302,680,000	397,320,000	-	700,000,000	10,000,000	60,000,000	70,000,000	70,000,000	70,000,000	70,000,000	70,000,000	70,000,000	210,000,000
		10층-19층	98	307,004,000	402,996,000	-	710,000,000	10,000,000	61,000,000	71,000,000	71,000,000	71,000,000	71,000,000	71,000,000	71,000,000	213,000,000
		20층-29층	94	311,760,400	409,239,600	-	721,000,000	10,000,000	62,100,000	72,100,000	72,100,000	72,100,000	72,100,000	72,100,000	72,100,000	216,300,000
		30층 이상	84	316,084,400	414,915,600	-	731,000,000	10,000,000	63,100,000	73,100,000	73,100,000	73,100,000	73,100,000	73,100,000	73,100,000	219,300,000
	102동 6호 103동 6호 104동 6호	2층	3	287,546,000	377,454,000	-	665,000,000	10,000,000	56,500,000	66,500,000	66,500,000	66,500,000	66,500,000	66,500,000	66,500,000	199,500,000
		3층	3	290,572,800	381,427,200	-	672,000,000	10,000,000	57,200,000	67,200,000	67,200,000	67,200,000	67,200,000	67,200,000	67,200,000	201,600,000
		4층	3	293,599,600	385,400,400	-	679,000,000	10,000,000	57,900,000	67,900,000	67,900,000	67,900,000	67,900,000	67,900,000	67,900,000	203,700,000
		5층-6층	5	302,680,000	397,320,000	-	700,000,000	10,000,000	60,000,000	70,000,000	70,000,000	70,000,000	70,000,000	70,000,000	70,000,000	210,000,000
		7층-9층	8	311,760,400	409,239,600	-	721,000,000	10,000,000	62,100,000	72,100,000	72,100,000	72,100,000	72,100,000	72,100,000	72,100,000	216,300,000
		10층-19층	25	316,084,400	414,915,600	-	731,000,000	10,000,000	63,100,000	73,100,000	73,100,000	73,100,000	73,100,000	73,100,000	73,100,000	219,300,000
		20층-29층	25	320,840,800	421,159,200	-	742,000,000	10,000,000	64,200,000	74,200,000	74,200,000	74,200,000	74,200,000	74,200,000	74,200,000	222,600,000
		30층 이상	19	325,164,800	426,835,200	-	752,000,000	10,000,000	65,200,000	75,200,000	75,200,000	75,200,000	75,200,000	75,200,000	75,200,000	225,600,000
	102동 3,4호 103동 3,4호 104동 3,4호 106동 1,2호 112동 3,4호	2층	10	287,546,000	377,454,000	-	665,000,000	10,000,000	56,500,000	66,500,000	66,500,000	66,500,000	66,500,000	66,500,000	66,500,000	199,500,000
		3층	10	290,572,800	381,427,200	-	672,000,000	10,000,000	57,200,000	67,200,000	67,200,000	67,200,000	67,200,000	67,200,000	67,200,000	201,600,000
		4층	10	293,599,600	385,400,400	-	679,000,000	10,000,000	57,900,000	67,900,000	67,900,000	67,900,000	67,900,000	67,900,000	67,900,000	203,700,000
		5층-6층	18	302,680,000	397,320,000	-	700,000,000	10,000,000	60,000,000	70,000,000	70,000,000	70,000,000	70,000,000	70,000,000	70,000,000	210,000,000
		7층-9층	22	320,840,800	421,159,200	-	742,000,000	10,000,000	64,200,000	74,200,000	74,200,000	74,200,000	74,200,000	74,200,000	74,200,000	222,600,000

약식 표기	동/라인	층	무순위 (사후) 공급 세대수	분양가격				계약금(10%)		중도금(60%)						잔금
				대지비	건축비	부가 가치세	계	1차	2차	1차(10%)	2차(10%)	3차(10%)	4차(10%)	5차(10%)	6차(10%)	30%
								계약 시	1개월 내	2027.06.17.	2028.02.17.	2028.11.17.	2029.07.18.	2029.12.17.	2030.05.17.	
		10층-19층	68	325,164,800	426,835,200	-	752,000,000	10,000,000	65,200,000	75,200,000	75,200,000	75,200,000	75,200,000	75,200,000	75,200,000	225,600,000
		20층-29층	61	329,488,800	432,511,200	-	762,000,000	10,000,000	66,200,000	76,200,000	76,200,000	76,200,000	76,200,000	76,200,000	76,200,000	228,600,000
		30층 이상	55	334,245,200	438,754,800	-	773,000,000	10,000,000	67,300,000	77,300,000	77,300,000	77,300,000	77,300,000	77,300,000	77,300,000	231,900,000
84E	107동 1호	2층	1	278,033,200	364,966,800	-	643,000,000	10,000,000	54,300,000	64,300,000	64,300,000	64,300,000	64,300,000	64,300,000	64,300,000	192,900,000
		3층	1	281,060,000	368,940,000	-	650,000,000	10,000,000	55,000,000	65,000,000	65,000,000	65,000,000	65,000,000	65,000,000	65,000,000	195,000,000
		4층	1	284,086,800	372,913,200	-	657,000,000	10,000,000	55,700,000	65,700,000	65,700,000	65,700,000	65,700,000	65,700,000	65,700,000	197,100,000
		5층-9층	4	302,247,600	396,752,400	-	699,000,000	10,000,000	59,900,000	69,900,000	69,900,000	69,900,000	69,900,000	69,900,000	69,900,000	209,700,000
		10층-19층	10	307,004,000	402,996,000	-	710,000,000	10,000,000	61,000,000	71,000,000	71,000,000	71,000,000	71,000,000	71,000,000	71,000,000	213,000,000
		20층-29층	10	311,328,000	408,672,000	-	720,000,000	10,000,000	62,000,000	72,000,000	72,000,000	72,000,000	72,000,000	72,000,000	72,000,000	216,000,000
		30층 이상	2	316,084,400	414,915,600	-	731,000,000	10,000,000	63,100,000	73,100,000	73,100,000	73,100,000	73,100,000	73,100,000	73,100,000	219,300,000
	110동 1호 111동 1호	2층	2	287,113,600	376,886,400	-	664,000,000	10,000,000	56,400,000	66,400,000	66,400,000	66,400,000	66,400,000	66,400,000	66,400,000	199,200,000
		3층	2	290,140,400	380,859,600	-	671,000,000	10,000,000	57,100,000	67,100,000	67,100,000	67,100,000	67,100,000	67,100,000	67,100,000	201,300,000
		4층	2	293,167,200	384,832,800	-	678,000,000	10,000,000	57,800,000	67,800,000	67,800,000	67,800,000	67,800,000	67,800,000	67,800,000	203,400,000
		5층-6층	4	302,247,600	396,752,400	-	699,000,000	10,000,000	59,900,000	69,900,000	69,900,000	69,900,000	69,900,000	69,900,000	69,900,000	209,700,000
		7층-9층	5	311,328,000	408,672,000	-	720,000,000	10,000,000	62,000,000	72,000,000	72,000,000	72,000,000	72,000,000	72,000,000	72,000,000	216,000,000
		10층-19층	9	316,084,400	414,915,600	-	731,000,000	10,000,000	63,100,000	73,100,000	73,100,000	73,100,000	73,100,000	73,100,000	73,100,000	219,300,000
		20층-29층	7	320,408,400	420,591,600	-	741,000,000	10,000,000	64,100,000	74,100,000	74,100,000	74,100,000	74,100,000	74,100,000	74,100,000	222,300,000
		30층 이상	10	325,164,800	426,835,200	-	752,000,000	10,000,000	65,200,000	75,200,000	75,200,000	75,200,000	75,200,000	75,200,000	75,200,000	225,600,000
106B	101동 1호 105동 1호	2층	2	319,168,200	418,938,000	41,893,800	780,000,000	10,000,000	68,000,000	78,000,000	78,000,000	78,000,000	78,000,000	78,000,000	78,000,000	234,000,000
		3층	2	322,441,720	423,234,800	42,323,480	788,000,000	10,000,000	68,800,000	78,800,000	78,800,000	78,800,000	78,800,000	78,800,000	78,800,000	236,400,000
		4층	2	326,124,430	428,068,700	42,806,870	797,000,000	10,000,000	69,700,000	79,700,000	79,700,000	79,700,000	79,700,000	79,700,000	79,700,000	239,100,000
		5층-6층	4	336,763,370	442,033,300	44,203,330	823,000,000	10,000,000	72,300,000	82,300,000	82,300,000	82,300,000	82,300,000	82,300,000	82,300,000	246,900,000
		7층-9층	6	365,815,860	480,167,400	48,016,740	894,000,000	10,000,000	79,400,000	89,400,000	89,400,000	89,400,000	89,400,000	89,400,000	89,400,000	268,200,000
		10층-19층	10	371,135,330	487,149,700	48,714,970	907,000,000	10,000,000	80,700,000	90,700,000	90,700,000	90,700,000	90,700,000	90,700,000	90,700,000	272,100,000
		20층-29층	1	376,454,800	494,132,000	49,413,200	920,000,000	10,000,000	82,000,000	92,000,000	92,000,000	92,000,000	92,000,000	92,000,000	92,000,000	276,000,000
	101동 2호 105동 2호	2층	2	319,168,200	418,938,000	41,893,800	780,000,000	10,000,000	68,000,000	78,000,000	78,000,000	78,000,000	78,000,000	78,000,000	78,000,000	234,000,000
		3층	2	322,441,720	423,234,800	42,323,480	788,000,000	10,000,000	68,800,000	78,800,000	78,800,000	78,800,000	78,800,000	78,800,000	78,800,000	236,400,000
		4층	2	326,124,430	428,068,700	42,806,870	797,000,000	10,000,000	69,700,000	79,700,000	79,700,000	79,700,000	79,700,000	79,700,000	79,700,000	239,100,000
		5층-6층	4	336,763,370	442,033,300	44,203,330	823,000,000	10,000,000	72,300,000	82,300,000	82,300,000	82,300,000	82,300,000	82,300,000	82,300,000	246,900,000
		7층-9층	6	372,772,090	489,298,100	48,929,810	911,000,000	10,000,000	81,100,000	91,100,000	91,100,000	91,100,000	91,100,000	91,100,000	91,100,000	273,300,000
		10층-19층	11	378,091,560	496,280,400	49,628,040	924,000,000	10,000,000	82,400,000	92,400,000	92,400,000	92,400,000	92,400,000	92,400,000	92,400,000	277,200,000
		20층-29층	1	383,411,030	503,262,700	50,326,270	937,000,000	10,000,000	83,700,000	93,700,000	93,700,000	93,700,000	93,700,000	93,700,000	93,700,000	281,100,000
180B	101동 1호 105동 1호	30층 이상	2	1,195,653,180	1,569,406,200	156,940,620	2,922,000,000	10,000,000	282,200,000	292,200,000	292,200,000	292,200,000	292,200,000	292,200,000	292,200,000	876,600,000

구분	내용
대상자	■ 무순위(사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전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청약통장 가입여부와 무관하게 신청가능 ■ 외국인은 주민등록법상 세대원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무주택세대구성원 자격을 필요로 하는 무순위 청약이 불가합니다.
청약신청 제한	■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청약 신청 불가 - 동 주택에 당첨되어 계약을 체결한 분 또는 예비입주자 중 추가입주자로 선정된 분 - 동 주택에 당첨되었으나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분 - 부적격 당첨자로서 그 제한기간 중에 있는 분 - 공급질서교란자로서 그 제한기간 중에 있는 분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방법	■ 한국부동산원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주택형별 무작위 추첨으로 무순위(사후) 당첨자 선정 및 동·호수 배정 ■ 주택형별 무순위(사후) 공급세대수의 500%까지 무작위 추첨으로 예비입주자 선정 및 예비순번 배정

■ 청약신청 방법 및 절차(PC·모바일)

- 경로 : 청약홈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청약신청 → APT 무순위 → 주택명 및 주택형 선택 → 유의사항 및 청약자격 확인 → 인증서를 통한 전자서명 → 청약신청 완료
- 청약신청 시간 : 09:00~17:30
- * 17:30까지 청약신청 완료해야 하며, 청약 신청 진행 중 17:30이 경과하면 청약신청이 되지 않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신청 취소 방법 및 절차(PC·모바일)

- 경로 : 청약홈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청약신청 → APT → 청약취소 → 취소하고자 하는 신청내역 선택 → 인증서를 통한 전자서명 → 청약신청 취소 완료
- 청약신청 취소 가능시간 : 청약신청일 당일 09:00~17:30
- * 청약신청일 당일 17:30까지 청약신청 취소 완료해야 하며, 청약신청일 당일 17:30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청약신청 취소가 불가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 발표 서비스

청약홈	- 조회방법 : 청약홈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청약당첨조회 - 조회기간 : 2026.09.17.(목) ~ 2026.09.26.(토) (10일간) - 당첨 결과는 착오 안내 가능성이 있으므로 유선 및 서면 등 별도 통지하지 않습니다.
문자	- 제공일시 : 2026.09.17.(목) 08:00 (제공시간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제공대상 : 청약 신청 시 휴대폰 번호를 등록하고 SMS 수신에 동의한 당첨(예비)자 * 당첨자 발표 안내 문자에는 스미싱 등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별도의 링크(URL)를 포함하고 있지 않으므로,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의 링크(URL) 또는 전화번호는 절대 누르지 않는 등 유사한 스미싱 문자에 대해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통신 환경 등에 따라 문자가 정상적으로 수신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정확한 당첨여부는 반드시 청약홈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예비입주자) 제출 서류(금회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함)

구분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기준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공통서류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본인	건분주택 비치
	○		신분증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 재외동포 : 국내거소사실신고증 ※ 모바일 신분증 불가(실물 지참 필수) ※ 2020.12.21. 이후 신규발급 여권은 무인발급기에서 여권정보증명서를 발급받아 본인 여권과 함께 제출
	○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본인 발급 인감증명서에 한함(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대체도 가능하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제3자 대리신청은 불가) ※ 정부24 온라인 인감증명서 사용가능(1.발급용도 : '기타'선택 → 아파트 계약용 / 2.제출처 : '한강 푸르지오 리버프론트'으로 설정하여 발급)
	○		주민등록표등본(상세)		본인 및 세대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모두 포함하여 "전체 포함" 발급
	○		주민등록표초본(상세)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과거 주소변동 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포함하여 "전체 포함"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출입국사실증명원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 기록대조일은 당첨자 생년월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출입국 기록 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 개명한 자의 경우 개명 이전 성명의 발급본 추가 제출 필요 (기록대조일 : 본인 생년월일 ~ 개명 이전 일로 설정)
		○	주민등록표등본(전체 포함)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상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제출 - 배우자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 과거주소변동사항,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전체 포함"하여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공급신청자 본인 또는 배우자 주민등록표 등본상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등재된 경우 - 본인 및 세대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부적격 통보를 받은 자		○	전세피해자 확인서류	본인 또는 세대원	전세피해자 낙찰주택 소유기간(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그 임차주택을 경매 또는 공매로 낙찰 받아 소유 기간)을 무주택 기간으로 인정받기 위한 경우 ※단, 낙찰 주택이 주거전용면적 85㎡이하이면서, 주택공시가격이 1억5천만원(수도권3억원)이하인 경우에만 해당 ① 해당 임차주택 임대차계약서 사본 ② 낙찰 증빙서류 : 매매허가결정서 또는 매각결정통지서 사본 ③ 해당 임차주택 등기사항증명서 원본 ④ 채권자의 확인서류 : 배당표,배당요구신청서 등의 사본 또는 배분계산서 등의 사본
		○	무주택 소명서류	해당 주택	'주택소유 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 기준'에 따른 해당 서류제출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건축물대장등본(가옥대장등본 포함), 무허가건물확인서, 철거예정증명서, '소형 저가주택'임을 증명하는 서류(주택 공시가격 증명원 등), 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본인	본인 발급 인감증명서에 한함(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제3자 대리신청은 불가 / 용도 : 아파트 계약 위임용) ※ 정부24 온라인 인감증명서 사용가능(1.발급용도 : '기타'선택→아파트 계약 위임용 / 2. 제출처 : '한강 푸르지오 리버프론트'으로 설정하여 발급)
대리인 신청 시 추가사항	○		인감도장	본인	공급신청자 본인의 인감도장
	○		위임장	본인	공급신청자의 인감도장 날인 (건분 주택에 비치)
	○		신분증	대리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 모바일 신분증 불가(실물 지참 필수) ※ 2020.12.21. 이후 신규발급 여권은 무인발급기에서 여권정보증명서를 발급받아 본인 여권과 함께 제출
	○				

■ 당첨자 계약 체결

- 계약 체결 일시 : 2026.09.18.(금) 10:00~14:00

- 계약 체결 시 구비 서류 (금회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함)

구분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기준	서류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해당자			
공통 서류		○	자격검증서류	-	입주대상자 자격 검증 서류 일체(입주대상자 자격 검증 서류 제출기한 내 제출한 경우 제외)
		○	추가 개별 통지 서류	-	기타 사업주체가 적격 여부 확인을 위해 요구하는 서류(개별 통지)

	○		계약금 무통장 입금증	-	건본주택에서 계약금(현금 또는 수표) 수납 불가
	○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본인	본인 발급 인감증명서에 한함(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대체도 가능하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제3자 대리신청은 불가) ※ 정부24 온라인 인감증명서 사용가능(1. 발급용도 : '기타'선택 → 아파트 계약용 / 2. 제출처: "한강 푸르지오 리버프론트"로 설정하여 발급)
	○		인감도장	본인	본인서명사실 확인서로 제출자는 본인서명
	○		신분증	본인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 재외동포 : 국내거소사실신고증 ※ 모바일 신분증 불가(실물 지참 필수) ※ 2020.12.21.일 이후 신규발급 여권은 무인발급기에서 여권정보증명서를 발급받아 본인 여권과 함께 제출
	○		전자수입인지 (사본)	-	- 전자수입인지(종이문서용) 구매 방법 및 금액 - 구매방법 : 우체국, 은행에 방문하여 구매하거나 전자수입인지 사이트(https://www.e-revenuestamp.or.kr)에 접속, 구매 및 출력 - 구매금액 : 계약서 기재금액이 1천만원 초과 3천만원이하 : 2만원, 3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 : 4만원,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 7만원, 1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15만원, 10억원 초과 : 35만원 ※ 인지세는 사업주체와 분양계약자가 1/2 씩 균등 부담(※세부 사항은 별도 안내 예정) - 아파트 공급계약, 발코니확장계약, 추가 선택품목 계약 등에 따른 인지세 각각 별도 납부
	○		부동산 실거래 신고서,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	-	접수장소 비치
부적격 통보를 받은 경우		○	무주택 소명서류	해당 주택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가옥대장등본 포함) 무허가건물확인서 또는 철거예정증명서, 부동산종합증명서 소형·저가주택임을 증명하는 서류(주택공시가격 증명원 등) 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당첨사실 소명서류	-	-
대리인 신청 시 추가사항	○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본인(당첨자)	본인 발급 인감증명서에 한함(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제3자 대리신청은 불가 / 용도 : 아파트 계약 위임용) ※ 정부24 온라인 인감증명서 사용가능(1.발급용도 : '기타'선택 → 아파트 계약 위임용 / 2.제출처 : '한강 푸르지오 리버프론트'로 설정하여 발급)
	○		위임장	본인(당첨자)	공급신청자의 인감도장 날인 (건본 주택에 비치)
	○		신분증	대리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 모바일 신분증 불가(실물 지참 필수) ※ 2020.12.21. 이후 신규발급 여권은 무인발급기에서 여권정보증명서를 발급받아 본인 여권과 함께 제출

■ 예비입주자 동·호 배정 및 계약체결

- 예비입주자 동·호 배정 일시 : 2026.09.18.(금) 15:00까지 입장완료 후 예비순번 순서대로 동·호 배정
- 예비입주자 계약 체결 일시 : 2026.09.18.(금) 동·호 배정 후 즉시 계약
- 계약 체결 시 구비서류 : 상기 당첨자 계약 체결 구비 서류 참조
- 예비입주자 동·호 배정 및 계약 체결 일시는 현장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해당 주택형의 계약 현황 및 예비입주자 계약 진행에 따라 예비입주자 선정이 진행되지 않을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사업주체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계약 시 현금 수납은 불가하며, 계약금을 즉시 이체할 수 있는 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1일 이체 한도 확인).

7 참고사항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제4항 및 제53조)	
검색대상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세대원 전원
주택의 범위	건물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관리대장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와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분양권등
주택처분 기준일	1.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등기접수일 2. 건축물대장등본: 처리일 2의2. 분양권등에 관한 계약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공급계약체결일 2의3. 제2조제7호다목에 따른 분양권등의 매매계약서 가. 분양권등의 매매 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경우에는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 나. 분양권등을 증여나 그 밖의 사유로 처분한 경우 사업주체와의 계약서상 명의변경일 3. 그밖에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경우	1.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라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2.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가.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3.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4.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5. 주택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가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6.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이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7.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8. 무허가건물(중전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이 경우 소유자는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해야 함)																					
9. 주택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주택 또는 분양권등으로서 해당 목에서 정하는 주거전용면적 및 가격 요건을 갖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가. 「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으로서 나목3)에 해당하지 않는 것: 주거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로서 별표 1 제1호가목2)에 따른 가격이 1억원(수도권은 1억6천만원) 이하일 것																					
나. 다음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로서 별표 1 제1호가목2)에 따른 가격이 3억원(수도권은 5억원) 이하일 것																					
1) 「주택법 시행령」 제2조 각 호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																					
2) 「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으로서 3)에 해당하지 않는 것																					
3) 「주택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																					
<table><tr><td>조항</td><td>주택 또는 분양권등의 유형</td><td>주거전용면적</td><td>수도권</td><td>비수도권</td></tr><tr><td>제53조제9호가목</td><td>아파트(도시형 생활주택 제외)</td><td>60㎡ 이하</td><td>1억 6천만원</td><td>1억원</td></tr><tr><td rowspan="3">제53조제9호나목</td><td>단독주택</td><td rowspan="3">85㎡ 이하</td><td rowspan="3">5억원</td><td rowspan="3">3억원</td></tr><tr><td>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td></tr><tr><td>도시형 생활주택</td></tr></table>					조항	주택 또는 분양권등의 유형	주거전용면적	수도권	비수도권	제53조제9호가목	아파트(도시형 생활주택 제외)	60㎡ 이하	1억 6천만원	1억원	제53조제9호나목	단독주택	85㎡ 이하	5억원	3억원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	도시형 생활주택
조항	주택 또는 분양권등의 유형	주거전용면적	수도권	비수도권																	
제53조제9호가목	아파트(도시형 생활주택 제외)	60㎡ 이하	1억 6천만원	1억원																	
제53조제9호나목	단독주택	85㎡ 이하	5억원	3억원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																				
	도시형 생활주택																				
10. 제27조제5항 및 제28조제10항제1호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아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사람은 제외)																					
11. 임차인으로서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지 못한 사람이 임차주택을 경매 또는 공매로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그 주택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함																					
가. 주택가격이 1억5천만원(수도권은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이 경우 주택가격의 산정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제1호가목2)를 준용함)																					
나.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12. 주택공급 신청자가 임차인으로서 거주하던 임차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생애 최초로 취득한 경우로 한정한다)한 주택(「주택법 시행령」 제2조 각 호 및 제3조제1항제2호·제3호에 따른 주택만 해당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일 것																					
나. 주거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으로서 그 취득가격(「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한 가격을 말한다)이 2억원(수도권은 3억원) 이하일 것																					
다. 해당 주택의 취득일(제23조제4항제1호 또는 제2호 중 빠른 날을 말한다) 전날까지 1년 이상 해당 주택에 거주했을 것																					
■ 참고사항																					
- 당첨자 계약은 상기 정해진 기간 내 계약하지 않은 경우(계약금 납부 및 계약서 작성 등) 당첨포기로 간주하며, 이에 대해 명확히 인지하고 청약하여야 합니다.																					
- 본 무순위 입주자모집공고는 청약통장을 사용하지 않는 청약으로 청약 당첨(예비입주자 선정 포함)시 당첨자로 명단관리 되지 않아 재당첨 제한 등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접수일시 경과 후 수정이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분양일정상 계약일 이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에는 아파트 당첨 및 계약이 임의 해지될 수 있으며, 당첨취소세대는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무순위 입주자모집공고 상 명시되지 않은 내용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2026.07.30.)를 반드시 확인하시고 청약신청 하시길 바랍니다.																					
■ 사업주체 및 시공업체																					

구분	사업주체(시행사)	시공사
상호명	주식회사 한강시네폴리스개발	(주)대우건설
주소	경기도 김포시 태장로 789, 6층 603호(장기동,금광하이테크시티)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170, 에이동(을지로 4가, 을지트윈타워)
법인등록번호	124411-0155136	110111-2137895

※ 본 분양물건은 해당 사업의 주택공급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인 (주)한강시네폴리스개발에서 시행,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계약자는 다음 사항을 반드시 인지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1. 본 사업은 시행자인 (주)한강시네폴리스개발이 「주택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등록사업자와 공동(주)한강시네폴리스개발, (주)대우건설)으로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사업으로서, 실질적인 사업주체는 토지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주)한강시네폴리스개발입니다. 따라서 분양계약서 및 보존등기 상의 사업주체는 토지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주)한강시네폴리스개발로 명기될 예정입니다.
2.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는 「법인세법」 제51조의2에 따라 자금관리업무를 자금관리사무수탁회사(신탁업을 영위하는 금융회사)에 위탁하도록 되어 있어 분양수입금 계좌의 명의는 (주)한강시네폴리스개발의 자금관리 대리사무사인 우리자산신탁(주) 명의로 되어있습니다.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분양계약서의 일부로 구성되며, 청약자는 필히 본 입주자모집공고 내용을 숙지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편집 및 인쇄 과정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건본주택 또는 사업주체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사항의 오류가 있을 시는 관계법령이 우선합니다.

■ 자금관리 대리사무

- ① 우리자산신탁(주)(이하 “자금관리 대리사무사”라 한다)는 분양수입금 등의 자금관리를 담당하며, (수분양자의 중도해지에 의한 환불금 등) “매도인 겸 사업시행자”(사업주체)로서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② 자금관리대리사무사가 매도인(사업주체)과 체결한 대리사무계약의 조약에 따라 자금관리대리사무계약이 해지 또는 해제되는 경우, 자금관리대리사무사가 관리하는 분양수입금과 자금관리업무 모두 매도인(사업주체)에게 포괄승계되며 자금관리대리사무사의 업무는 종결, 면책됨을 확인합니다.
- ③ 매도인 겸 사업시행자(사업주체)의 매수인에 대한 분양대금 총액을 “자금관리 대리사무사”에게 양도하고, 수분양자는 이를 위해 분양수입금을 “자금관리 대리사무사”에게 납부하기로 합니다.
- ④ “수분양자”는 분양대금을 반드시 지정된 분양수입금계좌로 납부해야 하며, 지정 계좌 외의 다른 경로로 입금된 금액은 정당한 납부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⑤ “자금관리 대리사무사” 는 부족한 사업비의 조달에 관여하지 아니합니다.
- ⑥ "수분양자"가 납부한 분양대금은 토지비, 공사비 등의 지급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 ⑦ "수분양자"는 "자금관리 대리사무사"가 본 사업의 자금관리업무를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분양대금 반환 의무는 매도인 겸 사업시행자"(사업주체)가 부담함을 확인하며, 향후 분양대금 반환사유가 발생하여 본 사업의 자금관리계좌 잔액이 분양대금 반환 액보다 적을 경우 그 부족분에 대한 자금조달 의무는 "매도인 겸 사업시행자"(사업주체)의 책임으로 이행함을 확인합니다.
- ⑧ 분양대금반환과 관련하여 매수인인 “수분양자”는 "자금관리 대리사무사"에게 분양대금반환 등을 직접 청구할 수 없고, "매도인 겸 사업시행자"(사업주체)가 모든 책임을 지는 것에 동의합니다.

■ 본 무순위(사후) 입주자모집공고문 상 명시되지 않은 내용은 본 주택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문 및 당사 홈페이지(<https://prugio-riverfront.com/>)를 통해 반드시 확인하신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 건본주택

- 주소 : 경기도 김포시 풍무동 368-7

■ 홈페이지

- 주소 : <https://prugio-riverfront.com/>

■ 분양문의

- 031-982-3337 / 1668-0552